



## 스웨덴 연금개혁의 성공요인 분석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스웨덴은 이에 따른 연금기금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연금 가입자의 소득, 예상수명 및 납입기간의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연금수급액을 조정하는 명목확정기여연금(NDC)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임.

- 최근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국가별로 연금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의 성공적인 연금개혁 사례가 주목받고 있음.
  -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근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 등으로 인해 연금 수급과 납입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및 일본 등의 일부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젊은층의 납입액을 상향조정하고 고소득자의 납입비중을 늘려 고부담·저급여 형태로 연금구조를 전환하고 있음.
  
-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겪고 있는 스웨덴은 기존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연금가입자의 소득 및 예상수명 등에 따라 연금지급액을 조정하는 명목확정기여연금(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개혁안을 도입하였음.
  - 동 연금개혁안은 젊은층의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의 연금개혁과 공통점이 있으나, 납입기간의 GDP성장률과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각자의 계정별로 가상 적립액을 계산한 후 이를 추정사망률, 예상수명, 미래 추정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별로 급부수준을 조정하는 점에서 차별화됨.
  - 또한 대표적 복지국가로서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던 ‘보편주의’를 포기하고 빈곤층 노인에게만 ‘최저보장연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복지정책을 전환하여 연금지급 규모를 축소하였음.
  
- 이와 함께 연금 내 개인위탁계정(PPR, Premium Pension Reserve)을 신설하고 전체 임금의 18.5%인 연금보험료 중 2.5%p를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확정기여연금(FDC, Financial Defined Contribution)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음.
  - 매년말 연금가입자들에게 개인위탁계정에 대한 예상 수급액 정보를 오렌지색 봉투에 동봉하여 제공함으로써 현재 연금 납입 상태 및 수령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금운용 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옴.



•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장기간 사회활동을 할 경우 연금액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평균 퇴직연령이 61세에서 63세로 늘어나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임.

■ 동 연금개혁안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조정됨에 따라 경기침체 시 기업들의 연금지급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연금가입자들에게는 경제성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인적인 경제적 성취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스웨덴식 연금개혁을 도입할 경우 전체 GDP 중 연금부담액 비중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

• EU집행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식 연금개혁을 도입하고 있는 폴란드와 라트비아의 경우 GDP 대비 연금납입액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미국 등 여타 국가들의 경우에는 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미국 및 유럽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연금액 비중 예상치

(단위 : %)

	스웨덴	폴란드	라트비아	EU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2004년	10.61	3.9	6.8	11.5	12.8	6.6	11.4	6.6
2030년	11.0	9.2	5.6	13.1	14.3	7.9	12.3	7.9
2050년	11.2	8.0	5.6	14.1	14.8	8.6	13.1	8.6

자료 : EU Commission,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지난 2월중 세계은행(World Bank)은 향후 연금고갈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중국과 2050년 전체 인구의 1/3이 64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EU회원국 등에게 스웨덴식 연금개혁 모델 도입을 적극 추천하였으며, 이미 폴란드 등 여러 동유럽 국가들은 스웨덴식 개혁안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하였음.

• 폴란드의 경우 스웨덴식 연금개혁을 적극 도입하되 운용가능한 개인계좌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는 연금의 투자운용 부분을 제외한 명목확정기여연금(NDC)만을 도입하는 등 각 국가들은 자국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연금개혁안을 도입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안을 도입한 1998년 이후 스웨덴 경제가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경제둔화 시 연금지급액 삭감방안 자체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불입액의 40%를 보장하고 있는 대부분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스웨덴은 최저 연금지급액 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경제위기 발생 시 연금가입자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임.

• 일부 정치권에서는 동 연금개혁안에 대해 지도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둔화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심각한 경제위기 발생 시 연금제도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동 개혁안의 도입을 적극 반대하였으나, 스웨덴 정부는 기존 연금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